## 무배당엔젤하이브리드연금보험

# 사 업 방 법 서

## 무배당엔젤하이브리드연금보험

## 1. 보험종목의 명칭

보험종목의 명칭	구 분
무배당엔젤하이브리드연금보험	연금강화형, 기본형

## 2. 연금지급형태, 보험기간, 연금지급개시나이, 보험료 납입기간,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

구 분		상세내역	
연금지급형태		<ul> <li>&lt;종신연금형&gt;</li> <li>기간보증형(10, 15, 20, 25, 30년, 기대여명 보증지급)</li> <li>: 개인형, 부부형, 내리사랑형 [정액형, 체증형(5%, 10%)]</li> <li>100세보증형</li> <li>: 개인형, 부부형, 내리사랑형 [정액형, 체증형(5%, 10%)]</li> <li>조기집중형(10, 20, 30년 보증지급) : 2, 3, 4, 5배형</li> </ul>	
보험	연금개시전 보험기간	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	
	연금개시후 보험기간	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	
연금지급개시나이(A)		45 세~85 세 (단, 부부형의 남자는 48 세~85 세로 함)	
보험료 납입기간(m)		일시납	
가입나이		0세 ~ (A-5)세	
압	기본보험료	일시납	
주기	추가납입보험료	수시납	

- ※ 종신연금형 중 조기집중형 선택시 계약자는 보증지급기간이내로 조기집중지급기간(5 년 ~30년)을 선택하여야 한다.
- ※ 종신연금형(내리사랑형)의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 종피보험자의 나이는 만 15 세 이상이어 야 한다.
- ※ 종신연금형(부부형, 내리사랑형) 100 세보증형은 주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.
- ※ "기대여명"은 통계법 제 18 조(통계작성의 승인)에 의해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

계표의 성별·연령별 기대여명 연수(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를 말하며, 기대여명이 5 년 미만일 경우 기대여명은 5년으로 한다.

※ 종신연금형 중 기간보증형(기대여명 보증지급)은 개인형 또는 부부형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며, 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기대여명을 계산한다.

## 3.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 4. 배당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 5. 보험료에 관한 사항

## 가. 기본보험료

계약자가 계약시점에 일시에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하며, 1구좌를 한도로 하여 1,000만원 이상으로 한다.

### 나. 추가납입보험료

## 1) 연금개시전 보험기간

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와 달리「계약일로부터 5 년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」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. 다만, 계약일로부터 5 년 이내에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의 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가납입보험료로 하여「계약일로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」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다.

## 2) 연금개시후 보험기간

계약자가 행복설계자금 거치적립을 선택한 경우 행복설계자금 거치적립 보험기간 중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.

3) 추가납입보험료의 총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 배 이내로 한다.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 중도인출금의 합계액을 포함하며, 1 회 추가납입 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와 같다.

## □ 1회 추가납입보험료 한도

: 일시납 기본보험료 × 200%

-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합계액 + 중도인출금의 합계액

## 6.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 7.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 8. 해지계약의 부활(효력회복)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 9.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 10.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

## 가.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

1)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 12 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, 1 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주계약 해약환급금(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)의 70%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인출금액은 10 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인출할 수 있다.

- 2)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 액이 장래 위험보험료, 계약관리비용(유지관련비용) 및 계약체결비용을 충당할 최소 계약자적립액(최저보증이율 적용) 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으며, 보험료 추가납입이 있을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은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 관계없이 인출할 수 있다. 다만, 계약 후 10년 이내의 총 인출가능금액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「인출 시점까지의 총납입보험료」이하로 한다.
- 3)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, 추가납 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 적립액에서 인출이 가능하다.

## 나. 행복설계자금의 중도인출

- 1) 보험수익자는 행복설계자금의 거치적립 보험기간 중 행복설계자금(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)의 70% 범위내에서 보험년도 기준 연 12 회에 한하여 행복설계자금을 인출(다만, 인출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단위)할 수 있다.
- 2) 행복설계자금의 인출금액은 인출 후 행복설계자금이 연금지급개시시 행복설계자금 의 20% 이하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출할 수 있으며, 행복설계자금 거치적립 보험 기간 중 보험료 추가납입이 있을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은 행복설계자금에 관계없이 인출할 수 있다.
- 3) 중도인출은 행복설계자금 거치적립 보험기간 중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 액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,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행복설계자금에서 인출 가능하다.

## 11. 적립이율 등에 관한 사항

- 가. 연금계약에 적용되는 이율(이하 "적립이율"이라 한다)은 아래와 같다.
- 1) 가입후 5년 이내: 확정이율
- 2) 가입후 5년 초과: 공시이율
- 나.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매월 1 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, 당월 말일까지 1 개월간 확정 적용한다.

- 다.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 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한다.
  - 1) 공시기준이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. 다만, 공시기준이율 산출을 위한 운용자산이익률 계산시에는 시가평가되는 변액보험의 부채변동성을 혯지하기 위해 일반계정에서 운영하는 파생상품의 손익은 제외한다.
    - 공시기준이율(%) =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× α + 운용자산이익률 × (1-α)
  - 2) 공시기준이율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.
  - 3)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
    - 가)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.
      - 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(α) = { ( A / B ) + C } / ( A + C )
      -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(1-α) = 1 { ( A / B ) + C } / ( A + C )
      - A: 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
      - B :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
      - C: 직전년도 보험료 수입
    - 나)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.
    - 다) 가중치는 0.5%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.
    - 라)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, 60%를 초과할 수 없다.
    - 마) 「직전년도초 계약자적립액」과 「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」, 「보험료 수입」은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.
    - 바) 「보험료 수입」은 1년간 받은 보험료를 말한다.
  - 4)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
    - 가)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.

- 객관적 외부지표금리 = 국고채(5년) 수익률 × 국고채 가중치(β1) + 회사채(무보증 3년, AA-) 수익률 × 회사채 가중치(β2) + 통화안정증권(1년) 수익률 × 통화안정증권 가중치(β3) + 양도성예금증서(91일) 유통수익률 ×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(β4)
- 나)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수 있다.
- 다) 국고채(5년), 회사채(무보증 3년, AA-) 및 통화안정증권(1년) 수익률과 양도성예금 증서(91일)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 평균을 통해 산출한다.
- 라) 국고채 가중치(β1), 회사채 가중치(β2), 통화안정증권 가중치(β3),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(β4)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.
  - 국고채 가중치(β1) = a / (a + b + c + d)
  - 회사채 가중치(β2) = b / (a + b + c + d)
  - 통화안정증권 가중치(β3) = c / (a + b + c + d)
  -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(β4) = d / (a + b + c + d)
  -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(월평잔의 평균)
  -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(월평잔의 평균)
  -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(월평잔의 평균)
  -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(월평잔의 평균)
  -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.
  - 가중치는 0.5%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%이상 100%이하로 결정한다.

## 5) 운용자산이익률

- 가)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.
  - 운용자산이익률 = 운용자산수익률 투자지출률
- 나)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 하며,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 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.

- 운용자산수익률(%) = {(2 × 직전 1년간 투자영업수익) × 100} / { 직전 13개월말 현재운용자산 + 전월말 현재운용자산 (직전1년간투자영업수익 직전1년간투자영업비용) }
- 투자지출률(%) = {(2 × 직전 1년간 투자영업비용) × 100} / { 직전 13개월말 현재 운용자산 + 전월말 현재운용자산 (직전1년간투자영업수익 직전1년간투자영 업비용) }
- 다)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.
- 라. '가'의 공시이율은 동종계정 동종상품('가'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영되는 상품)의 배당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.
- 마.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 1 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 (상품공시실)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.
- 바.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 년 초과 10 년 이내에는 연복리 1.0%, 10 년 초 과시에는 연복리 0.5%를 적용하며,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.
- 사. 공시이율의 세부적인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「공시이율운용지침」에 따른다.
- 아. '가'의 확정이율은 「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」에서 정한 이율을 말한다.

## 12.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

- 가.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(이하 '보험계약대출'이라 합니다)을 받을 수 있다.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.
- 나. 계약자는 '가'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,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,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.

다.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적립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,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.

## 13.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 14. 보험료납입 중지제도에 관한 사항

해당사항 없음

## 15. 연금지급 및 행복설계자금에 관한 사항

## 가. 연금지급에 관한 사항

- 1) 연금지급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
  - -. 계약자는 연금개시전에 한하여 연금지급형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종신연금형, 확정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 중 2 가지 이 상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,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 율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연금형태에서의 복수 선택은 할 수 없다.

## ■ 연금지급형태 및 보험기간

구 분	연금개시 후 보험기간
<ul> <li>&lt;종신연금형&gt;</li> <li>기간보증형(10, 15, 20, 25, 30년, 기대여명 보증지급):</li> <li>개인형, 부부형, 내리사랑형 [정액형, 체증형(5%, 10%)]</li> <li>100세보증형(100세 보증지급):</li> <li>개인형, 부부형, 내리사랑형 [정액형, 체증형(5%, 10%)]</li> <li>조기집중형:</li> <li>10, 20, 30년 보증지급(2, 3, 4, 5배형)</li> </ul>	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
확정연금형	연금지급개시나이
[5, 10, 15, 20, 25, 30년 확정	계약해당일부터
(정액형, 체증형(5%, 10%))]	5, 10, 15, 20, 25, 30년까지

구 분	연금개시 후 보험기간
상속연금형	연금지급개시나이
	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
	연금지급개시나이
자유연금형	계약해당일부터
	최종연금 지급일까지

- ※ 2 가지 이상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을 이 상품의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으로 한다.
- ※ 종신연금형 중 조기집중형 선택시 계약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로 조기집중지급 기간(5년~30년)을 선택하여야 한다.
- ※ 종신연금형 중 기간보증형(기대여명 보증지급)은 개인형 또는 부부형에 한하여 선택 가능하며, 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기대여명을 계산한 다.
- 2) 종신연금형(부부형 또는 내리사랑형)에서 종신연금형(개인형)으로의 전환
  - -. 연금지급개시이후 종피보험자가 사망 이외의 원인(이혼 등)으로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연금형(개인형)으로 전환할 수 있다. 이 경우 종신연금형(개인형)과 종신연금형(부부형 또는 내리사랑형)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차액을 정산하고 전환시점부터의 연금액은 종신연금형(개인형)으로 전환된 연금액을 지급한다.

#### 나. 행복설계자금에 관한 사항

- 1) 행복설계자금: 연금지급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의 0%~50%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으로 행복설계자금 거치적립 선택시 연금개시후에는 「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.
- 2) 계약자는 선택한 행복설계자금(연금지급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의 0%~50%) 중 거치적립 미선택시와 거치적립 선택시의 선택비율을 정할 수 있다.
- 3) 행복설계자금 거치적립 보험기간: 행복설계자금의 거치적립 보험기간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과 [100 세-연금지급개시나이]년 중 작은 기간 이내의 연계약해당일로 선택할 수 있다.

### 다. '조기연금전환옵션'에 관한 사항

1) '조기연금전환옵션'이라 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아래 조기연금전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가 원할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최초로 도래하는 연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을 개시하는 옵션을 말한다.

- 2) 조기연금전환옵션 신청 후에는 연금지급 개시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.
- 3) 기타 연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'가'를 준용한다.

#### ■ 조기연금전환 조건

- 가) 보험계약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계약
- 나) 신청일 기준으로 해약환급금이 「이미 납입한 보험료(중도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, 특약보험료는 제외)」이상인 계약
- 다) 조기연금개시시점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나이가 45세~85세[다만, 종신연금형(부부형)의 남자는 48세~85세, 종신연금형(내리사랑형)의 종피보험자는 만15세이상]일 경우
- 라)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계약

## 16. 기타

## 가. 가입금액에 관한 사항

일시납 기본보험료

## 나. 상품명칭 운용에 관한 사항

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(금융기관대리점 제외)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(보험가입증서)에 기재할 수 있다.

## 다.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

보험기간, 보험료 납입주기, 보험료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,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.

## 라. 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

- 1) 회사는 연금개시 이전 유지보너스 발생일에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유지보너스를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액에 가산한다.
- 2) 유지보너스 = 유지보너스 기준금액 × 유지보너스 발생률
  - 가) 유지보너스 기준금액 = 일시납 기본보험료

### 나) 유지보너스 발생률

유지보너스	유지보너스 발생률	
발생일	연금강화형	기본형
계약일로부터 5 년	2.9%	0.0%
경과시점 연계약해당일		

- 3)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한 경우에는 감액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"유지보너스 기준금액"을 계산한다.
- 4)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「'이미 납입한 보험료(중도인 출 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, 특약보험료 제외)'와 '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(유 지보너스 예비적립액을 더한 금액)' 중 큰 금액」을 지급한다.

#### 마.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에 관한 사항

- 1)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이 '이미 납입한 보험료+1,000 원' 미만일 경우,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은 '이미 납입한 보험료+1,000 원'으로 한다.
- 2) 1)에서 '이미 납입한 보험료'는 중도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, 특약보험료는 제외된 금액을 말한다.

## 바. 무배당동양연금전환특약 LTC 연금전환형 전환에 관한 사항

- 1) 무배당동양연금전환특약 LTC 연금전환형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한다.
- 2) 무배당동양연금전환특약 LTC 연금전환형은 전환시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.
- 3) 2)에도 불구하고 무배당동양연금전환특약 LTC 연금전환형 전환시 연금액 계산에 적용하는 개인연금사망률은 주계약 가입 당시의 위험률을 적용한다. 다만,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, 이 경우회사는 연금개시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한다.

#### 사, 종신연금형 연금액 지급에 관한 사항

-.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당시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 개시 당시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 출한 연금액을 지급하며, 이 경우 회사는 연금개시전까지 연금액 변동내역 및 연금 지급형태 선택방법 등을 안내한다.

### 아.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

-.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보험업감독규정 제 4-14 조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포함하여 범용으로 판매할 수 있다.

## 자. 모집수수료에 관한 사항

-.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시에는 계약체결비용의 95%를 모집수수료의 최고 지급률로 한다.

#### 차.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제도 비교 설명

-. 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에게 저축성보험의 추가납입제도와 추가납입의 사업 비 등을 비교하여 설명하여야 한다.

#### 카. 추가납입보험료의 자동이체 서비스에 관한 사항

-. 회사는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.

#### 타. 피보험자 변경에 관한 사항

- 1)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법인이고, 피보험자가 해당법인의 임원(대표이사 포함) 또는 종업원이며, 법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계약에 한하여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 하는 경우 계약자는 새로운 피보험자의 동의 및 회사의 승낙을 얻어 연금개시전 보 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다.
  - 가) 피보험자가 퇴직하는 경우
  - 나) 새로운 피보험자가 계약자인 법인의 임원(대표이사 포함) 또는 종업원인 경우
  - 다) 새로운 피보험자의 교체나이(이 계약의 체결시점 기준 새로운 피보험자의 가입나이)가 "2. 연금지급형태, 보험기간, 연금지급개시나이, 보험료 납입기간,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"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

다만, 변경 후 피보험자에 대한 계약 내용 및 회사의 승낙기준 등은 변경 전 피 보험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.

- 2) 1)에 따라 피보험자를 교체하는 경우 변경 전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변경이 승낙된 때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, 회사는 승낙한 때부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장한다.
- 3) 1)에 따라 피보험자를 교체하는 경우 새로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4) 피보험자 변경의 신청 및 승낙은 약관 제 16 조(보험계약의 성립), 제 24 조(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) 제 2 항에서 제 4 항, 제 13 조(계약 전 알릴 의무), 제 14 조(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), 제 15 조(사기에 의한 계약)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 파. 해약환급률 및 연금액 등의 비교 설명에 관한 사항

-. 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업감독규정 제 7-60 조 제 3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연금보험에 대하여, 동 규정에 따라 설계한 연금보험의 해약환급률 및 연금액 등과 비교하여 설명하여야 한다.